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(김상미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숙박·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, 참여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의 위생·안전관리와 이용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- 대회 기간 중 지역 내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지원 대상 및 참여업소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 제한 및 지원 결정의 취소·환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8월 2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(규칙)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7~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숙박업소”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.
2. “외식업소”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.
3. “참여업소”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고 시장이 선정한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영업장을 두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 중인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 중에서 참여업소로 선정된 업소로 한다.

제4조(참여업소의 선정 등) ① 시장은 대회 운영상 필요성, 업소의 수용능력, 위생·안전관리 수준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참여업소의 모집·선정 기준,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지원내용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일반용 종량제봉투 지원사업
2. 위생관리용 물품 지원사업
3.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제한)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원한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업소에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
2.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3. 참여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4.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
5. 폐업한 경우

②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